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71호

스포츠 소속 단시간 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스포츠 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별표] 보수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구분 중 수영파트강사 보수를 ‘30,000’으로 한다. 구분 중 수상안전요원의 보수를 ‘19,0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